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65
----------	------

발의연월일 : 2024. 8. 1.

발의자 : 윤준병 · 서영교 · 이정현
김주영 · 박민규 · 이기현
이상식 · 송옥주 · 이병진
임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 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도록 하되,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지에 축사 곤충사육시설 및 부속시설 등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지만, 양어장 · 양식장 등 내수면 양식업(수산물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제한적인 사용기간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등).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단서 중 “제1호나목에서 정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양어장·양식장 등 수산물 생산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35조제1항제1호 중 “농축산업용”을 “농수축산업용”으로, “제2조제1호나목에”를 “제2조제7호 단서에”로, “농축산물”을 “농수축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1호나목에”를 “제2조제7호 단서에”로, “농축산물”을 “농수축산물”로 한다.

제49조의2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에 수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의2. (생 략)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u>제1호나목에서 정한</u>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 -----. 1. ~ 6의2. (현행과 같음) 7. -----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가. <u>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u> <u>하는 양어장·양식장 등</u> <u>수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u> <u>령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u> <u>용하는 경우</u> 나. <u>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u> <u>로 사용하는 경우</u>
<u><신 설></u>	
<u><신 설></u>	
8. (생 략)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	8. (현행과 같음)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 ----- -----

<p>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 -----.</p>
<p>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u>제2조제1호나목에</u> 따른 개량 시설과 <u>농축산물</u>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p>	<p>1. ----- ----- ----- <u>제2조제7호 단서에</u>----- -----<u>농수축산물</u>----- ----- -----.</p>
<p>2. ~ 5. (생 략) ② ~ ⑤ (생 략)</p>	<p>2.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 ----- ----- ----- ----- ----- -----.</p>
<p>1. (생 략) <u><신 설></u></p>	<p>1. (현행과 같음) 2. <u>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에 수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u></p>
<p><u>2. · 3. (생 략)</u></p>	<p>3. · <u>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u></p>